##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19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 박상웅·김미애·강승규

박덕흠 • 박형수 • 정연욱

김민전 • 이인선 • 조경태

김상훈 · 나경원 · 주호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의 부가로 사업개시 또는 실증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의 관리 체계가 지정기간 내 점검·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정해제 후의 성과 관리를 위한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단'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행정조직 법정주의

와 부합하도록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 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 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4조제2항 신설).
- 나.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 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 다.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 조의2 신설).
- 라.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1조의5 신설).

마.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특구계획의 수립,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41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및"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 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6조제4항 후단 중 "있다"를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제4항 전단 중 "제86조제9항"을 "제86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에도"를 "제10항에도"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제86조제10항"을 "제86조제11항"으로 한다.

제90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각각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본문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4항) 본문 중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다.

-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하여야 한다.
-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

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 2.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 3.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 4.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141조의5 및 제14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 수도권 시·도지사등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 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143조제1항제4호 중 "제90조제14항"을 "제90조제15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84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
	음)
<u>&lt;신 설&gt;</u>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규제자유특구의 성
	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
	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u>
<u>에</u>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
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	<u> 과관리 및</u>
·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	4
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u><신 설></u>

## <u>⑤</u> ~ <u>⑦</u> (생 략)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제7</u>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이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u>제6항</u>을 준용한다.

<u>있</u> 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
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
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
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
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
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⑥</u> ~ <u>⑧</u>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u>⑨</u> <u>利</u> 8
<u>ŏ</u> }
<u>제7항</u>

- ⑨ (생략)
- ① 제1항부터 <u>제9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저 등) ① ~ ③ (생 략)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 ⑨ (생 략)
  - ① 제86조제4항 및 <u>제9항에도</u>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u> </u>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제86조제10항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u>제10항에도</u>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 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① ~ ④ (생 략)

-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7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u>제86조제10항</u>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 4. 5.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조 ~ ⑤ (생 략)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

<u>.</u>
① ~ ⑭ (현행과 같음)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제86조제11항
4.·5. (현행과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 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후단 신설>

<u><신 설></u>

#### ⑦・⑧ (생 략)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 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 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 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⑩ (생략)

①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②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
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
하여야 한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
<u>여야 한다.</u>
<u>⑧</u> ・ <u>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u>⑩</u>
<u> </u>
제8항
① (현행 제10항과 같음)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u>제10항</u>에 따 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 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 며, <u>제10항</u>에 따라 연장된 임시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 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 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① · ① (생 략)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 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 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 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

<u>제11항</u>
- <u>제11항</u>
항과 같음)
( <u>1</u> ) <u>利14</u>
<u>항</u>
,

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생략)

16제1항부터제1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임시허가의절차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u><신 설></u>

<u>⑥</u> (현행 제15항과 같음)
<u> </u>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 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 2.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 3.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 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 4.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 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 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 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 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비수도권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 제143조(과태료) ①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90조제14항</u>을 위반하여 책 4. 제90조제15항-----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 거나, 인적 • 물적 손해에 대 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 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